

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8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0월 20일

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황 종 철

나. 제안이유

- 상위법 위임범위의 이탈, 미 규정사항 등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, 대·중·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성비를 규정(안 제8조)
-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의 사유를 신설(안 제11조)
 -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
(안 제11조제4항제1호)

- 주택 재개발,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
(안 제11조제4항제2호)
-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“지정·변경대상”을 “지정·변경·취소대상”으로 변경(안 제12조)
-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규제조항을 삭제(안 제13조)
 -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등을 삭제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○ 본 조례안은

지역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

- 상위법인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 제한에 관한 규제조항 삭제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사유 규정 신설을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 하다고 판단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 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